

## COMDEX Brazil 2002 한국공동관 참가안내

본회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정보통신 업계의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최대의 정보통신 관련 전시회인 『COMDEX BRAZIL 2002』에 한국공동관을 구성, 참가할 예정입니다.

동 전시회는 Networking/Internet /Telecommunication 전문 전시회인 Network

+Interop 2002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업계의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한국공동관 참가를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COMDEX SUCESU-SP Brazil 2002

(Co-located with NetWorld+Interop 2002)

URL : <http://www.comdex.com.br>

나. 전시기간 : 2002. 8. 20 ~ 8. 23 (4일간)

다. 전시장소 : Parque Anhembi, Sao Paulo, Brazil

라. 대상품목 : 컴퓨터 H/W 및 S/W, 컴퓨터 주변기기, 악세사리, 네트워크, 통신기기, 전자의료기기, 보안장비 등 정보통신 전품목

마. 2001년 전시실적

- 총 참가업체 : 약 1,200개사(한국공동관 : 13개사 16부스)
- 바이어 및 관람인원 : 약 230,000명(한국관 방문바이어 : 10,660명)
- 한국공동관 수출 상담실적 : 68,874천불

#### 2. 한국관 구성 계획

가. 한국공동관 전시규모 : 240sqm(20개 부스)

나. KOTRA와 공동 주관

#### 3. 참가업체 지원계획

가. 무상지원

- 부스장치
- 전시물품 운송(1CBM/1개사) 및 통관(단, 편도에 한함)

나. 용자지원 추천 : 해외시장개척기금(무역협회)

- 부스당 용자금액 한도 : 2,000만원
- 조건 : 연리 4%, 2년거치 일시상환

○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및 서약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한국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

**라. 여행패키지 운영**: 비용은 참가비와 별도로 업체 부담

**마. 한국공동관 설치 물품**: 전화, FAX, 인터넷, 음료 등

**바. 공동 도우미 배치(통역 및 행정업무 지원)**

#### 4. 국내외 홍보

**가. 국내**

○ 전자신문 등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 배포

**나.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 브라질 한국대사관 및 KOTRA 현지 무역관

**다. 해외 바이어 대상 초청메일 발송**: 약 2만명

**라.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디렉토리 제작 및 배포**

#### 5. 참가신청

**가. 참가비**

○ 1부스 신청시 : 5,700천원(회원사 : 5,130천원)

○ 2부스 신청시 : 10,800천원(회원사 : 9,720천원)

○ 3부스 신청시 : 16,200천원(회원사 : 14,580천원)

○ 본회 회원사는 참가비의 10% 할인

○ 한 업체에서 2부스 이상 신청시 할인(기적용)

※ 참가비 내역 : 장치공사비, 운송비를 제외한 임차료, 운영비 등

**나.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별첨) 제출 및 참가비 납부

**다. 참가비 송금**

○ 은행명 : 한미은행

○ 예금주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계좌번호 : 102-58817-256

**라. 제출서류**: 전시회 참가약관,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마. 신청기한**: 선착순 접수 마감

**바. 기타**: 참가신청 후 중도 취소할 경우 참가비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

**사. 신청서 접수 및 문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팀

○ 담당자 : 조규재 과장

○ 전 화 : 02-557-2417, 02-553-0941(교환 322)

○ F A X : 02-508-4199

○ E-Mail : kjcho@eiak.or.kr

## 2002년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 안내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한 장기저리(연 5.91%, 8년, 과제당 50억원까지)의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기술력 있는 전자업체에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2,000억원

-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1,350억원
-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400억원
- ◆ 신기술보급사업 : 250억원

#### 융자대상

- 1)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분야
  - 가) 자본재산업육성 관련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 '98. 12. 31)에 해당하는 기술제품중 전자분야
  - 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의 실용화 사업
  -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재 품목의 개발사업
- 2)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분야
  - 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1996-389호, '96. 10. 15)중 S/W 및 D/B분야

- 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의 실용화사업
  -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사업
- 3) 신기술 보급사업 분야
    - 가)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사업화
    - 나) 정부에서 공인한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우수재활용제품(GR)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 다) 특허를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라)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 대상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 '98. 12. 31)의 개발완료품목 사업화
    - 마)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2.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 비율	과제당 한도액
연 5.91%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50억원이내

※ 단, 대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신청,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및 접수방법

- 1) 신청 및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3차 접수 마감: 2002. 3. 15(금)
  - ※ 2/4분기 접수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임.
- 2)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업지원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우)135-080
  - 전화 : 02-565-5803, 02-553-0941  
(교환: 332)
  - 메일 : eiak@korea.com
- 3)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  
업은행, 주택은행, 농·수협,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 4)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1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
  - 나) 최근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2001년 또는 2000년 자료)
  - 라) 기타 지원 우대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업체만 우대적용)
- 5) 신청서양식 등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 [www.eiak.org](http://www.eiak.org) →  
정보자료실 → 자금지원정보
  - 메일송신 요청 : [eiak@korea.com](mailto:eiak@korea.com)

-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지원 우대조치

(증빙서류 제출업체에 한해 적용)

- 1)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결산재무제표 기준)
- 2)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3)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  
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협약서, 약정서등)
- 4)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과 함께 용자사업자별로 용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산  
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개발완료 확인서)
- 6)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98. 12. 31)  
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200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 1. 공통사항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지원제한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벤처창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배제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 지원한도

- ◆ 창업 및 진흥자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 구조개선자금(시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

#### 신청·접수기간

- ◆ 2002. 1. 7 ~ 자금소진시까지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공고

### 2.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

#### 구조개선자금

##### 사업목적

- ◆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지원규모 7,000억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것
  - 북한진출 중소기업

##### 지원범위

- ◆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축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다만, 지식기반 산업은 시설자금의 100%이내
- ◆ 인수·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 (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

### 신청·접수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판매·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규모** 2,400억원

### 지원대상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전업율 30% 이상)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 원부자재 구입,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 지원방법

- 중진공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 예외적인 경우 담보(부동산 등)부 직접(대리)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벤처창업 자금

### 사업목적

-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규모** 2,500억원

### 지원대상

- ◆ 창업을 준비중인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

# 계 시 판

## 지원범위

- ◆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지원방법
  - 중진공(신용보증기관)의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 예외적인 경우 담보(부동산 등)부 직접(대리)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보부, 순수신용)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 보증서부)
- ◆ 지역신용보증재단(일반 보증서부)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 사업목적

- ◆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 마련

## 지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 ◆ 지식기반 서비스업(전업율 30% 이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지원제한
  - 퇴폐향락업종 영위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

### 지원범위

- ◆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10억원 한도(단,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

### 신청·접수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사업목적

- ◆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2,500억원

### 지원대상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이하 업체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범위

-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 ◆ 대출취급은행
  - 국민·기업·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

### 신청·접수기관

-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촉진

### 지원규모

500억원

### 지원대상

- ◆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 ◆ 선정기술을 최근 1년 이내에 사업화하려는 Inno-Biz 선정업체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 지원제한
  -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m<sup>2</sup>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지원범위

- ◆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지원조건



# 계 시 판

- ◆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 신청·접수기간

- ◆ 추후 별도 공고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수출금융 지원자금

### 사업목적

-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 발전 도모

**지원규모** 500억원

### 지원대상

- ◆ 수출계약 중소기업
  - \*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지원

### 지원범위

- ◆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5.1%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

- ◆ 대출기간 : 최장 180일(선적일로부터 7~15일 이내)

### 대출방식

-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신청·접수기간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협동화사업 자금

### 사업목적

-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지원규모** 1,800억원

### 지원대상

-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 업종 미 적용
  -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 수의 1/2 범위 이내
  -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중인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 지원범위

-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 운전자금 : 사업장 중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 신청·접수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사업목적

-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지원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원규모 3,807억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 지원대상 : 제조업(전업을 30% 이상),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범위 : 공장·부지매입비, 시설 도입·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연구개발비 등
  - 대출금리 : 연 6.41%(정부 재정자금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8억원), 운전자금(3억원)
- ◆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 생산 중소기업
  - 지원범위 :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 디자인, 소재개발, 전시·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대출조건과 동일
- ◆ 시장재개발사업
  -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사업자
  - 지원범위 : 시장 재개발·재건축 자금 및

# 계 시 판

- 임시시장 설치자금
- 대출금리 : 6.41%(정부 재정자금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
  - 대출기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임시시장설치자금(8년, 거치기간 3

년 포함)

- 대출한도 :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100억원), 임시시장설치자금(5억원)

## 신청·접수기관

◆ 각 시·도 중소기업 지원 담당과

## 문의 및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	지방중기청	전화
서울	02) 509-7012	인천	032) 450-1114
부산·울산	051) 601-5120	강원	033) 258-3516
대구·경북	053) 659-2221	충북	043) 230-5333
광주·전남	062) 360-9141	전북	063) 210-6411
경기	031) 290-6990	경남	055) 268-2551
대전·충남	042) 481-4379	제주	064) 723-2101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 789-9224	광주	062) 361-0630
강남	02) 567-6800	대전	042) 483-2993
부산	051) 465-2301	경기	031) 215-1560
대구	053) 424-6970	기술평가	02) 789-9308
인천	032) 438-9080	사업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 769-6603/8	대전충남	042) 866-0114	경남	055) 269-5840/4
부산	051) 630-7430/6	경기	031) 259-7900	울산	052) 277-3283/6
대구경북	053) 601-5261/9	의정부	031) 878-0747/8	강원	033) 256-9611/3
인천	032) 450-0520/6	충북	043) 230-6800	강릉	033) 646-9967/8
광주전남	062) 600-3000	전북	063) 213-2130	제주	064) 751-2055/7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02)563-0671/3	경기(수원)	031)259-7700
부산	051)831-1183/7	강원(춘천)	033)251-1353/5
대구	053)554-5300	경남(창원)	055)263-2262/4
인천	032)822-2161/3	경북(구미)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전남(순천)	061)743-0365
대전	042)864-1701/6	충남(아산)	041)541-9831/3
울산	052)227-7462/5	충북(청주)	043)236-2691

## 2002년도 정밀기술진흥대회 포상신청 안내

### I. 목적

- ◆ 산업자원부 고시 제97-63호('97.4.21)
- ◆ 고도화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정밀

제품(설계)기술, 「정밀생산기술」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II. 대회분야 및 참가대상

분 야	참가대상	해당분야
정밀제품 기술분야	정밀기술(가공, 조립, 설계, 합성, 분석, 측정 등)을 근간으로 신기능 창출, 소형화, 다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정밀기계, 공작기계, 정밀화학제품(신약, 신소재), 정밀광학제품(레이저, 결상기록재상기기, 렌즈), 전기기기, 전자정보기기, 첨단의료기기 등 정밀기술을 응용하여 개발한 제품, 부품 및 소재
정밀생산 기술분야	정밀제품(첨단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우수 기술 중 고도의 정밀, 정확성이 요구되는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 및 Know How를 요구하는 전문단위기술(가공, 합성, 제어기술 등)을 개발한 기업 및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함.	정밀가공기술(절삭가공 성형, 금형, 특수가공), 정밀합성기술(정제, 생명공학, 공정개선), 정밀제어기술(초고속 및 초저속, 초정밀이송),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공정기술(고밀도영상기술, PVD, CVD, Etch, 고진공, 플라즈마, 청정기술 등) 등
유공자 포상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업체 및 관련기관 임직원으로 정밀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정부 포상지침에 위배되지 않은자. (동탑산업훈장 1점, 대통령표창3점, 국무총리표창3점, 산업자원부장관표창5점, 중소기업청장표창 6점, 산업기술시험원장표창 6점)	

※ 참가비 없음

## III. 심사방법

- ◆ 1차 심사 : 서류심사
- ◆ 2차 심사 : 발표대회 심사
- ◆ 3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정밀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IV. 심사항목

- ◆ 정밀제품기술부분 : 기술수준, 난이도, 자금률, 유일성, 성능, 상품성, 파급효과
- ◆ 정밀생산기술부분 : 기술수준, 난이도, 우월성, 신뢰도, 발전성, 파급효과
- ◆ 유공자 부분
  - 기업대표(대기업은 임원 이상) : 수공기간, 경영상태, 후생복지, 기술개발실적,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실적, 출력기술의 우수성, 국가산업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
  - 참가업체 및 관련기관 임직원 : 수공기간, 정밀기술관련, 기술개발실적, 출력기술 개발에 기여한 정도, 소속사가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참가한 실적, 출력기술의 우수성, 전문가격증 및 교육실적

## V. 대회 일정

- ◆ 개최공고 : 3월 5일
- ◆ 접수기간 : 3월 11일 ~ 4월 30일
- ◆ 1차 평가 : 5월 9일 ~ 5월 10일
- ◆ 발표대회 : 7월 3일 ~ 7월 4일
- ◆ 최종심의 : 7월 12일 (정밀기술심의위원회)

- ◆ 시상 : 11월 13일 (COEX Grand Conference Room)

## VI. 시상내용

- ◆ 대상(대통령상) : 2업체
- ◆ 우수상(국무총리상) : 2업체
- ◆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 6업체
- ◆ 은상(중소기업청장상) : 6업체
- ◆ 동상(산업기술시험원장상) : 6업체
- ◆ 유공자 표창
  - 동탑산업훈장 : 1명
  - 대통령상표창 : 3명
  - 국무총리상표창 : 3명
  - 산업자원부장관표창 : 5명
  - 중소기업청장표창 : 6명
  - 산업기술시험원장 : 6명

## VII. 특전

- ◆ 산업기술대전 전시공간 무료 활용
- ◆ 정밀기술 등급 부여
- ◆ 산업기술시험원의 각종지원 (ISO 인증, K-Mark인증 품목지정 등)
- ◆ 주요 구매기관에 우선 구매 알선

## VIII. 주최 및 후원

- ◆ 주최 : 산업기술시험원
-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
- ◆ 추천기관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3개 기관
- ◆ 문의처 : 산업기술시험원 주정우 팀장 (전화: 02-8601-510)